

## 황사 및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애 위험 경보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'분진'에 관한 정의(제605조)에 황사 및 미세먼지가 포함(개정일 2017.12.28.)됨에 따라 **황사 및 미세먼지 경보 발령지역에서 작업하는 옥외노동자의 건강보호**를 위해 **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방진마스크 지급, 황사·미세먼지로 인한 유해성 주지 등의 조치**를 하여야 합니다.

### □ 황사 및 미세먼지 경보발령 기준 및 확인방법

구분	내용		농도 및 경보 확인방법
황사	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(PM <sub>10</sub> ) 농도가 800 $\mu$ g/m <sup>3</sup>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		기상청 날씨누리 ( <a href="http://www.weather.go.kr">http://www.weather.go.kr</a> )
미세먼지*	PM <sub>10</sub>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시간당 PM <sub>10</sub> 평균농도가 300 $\mu$ g/m <sup>3</sup>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환경부 에어코리아 ( <a href="http://www.airkorea.or.kr">http://www.airkorea.or.kr</a> )
	PM <sub>2.5</sub>	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에서 시간당 PM <sub>2.5</sub> 평균농도가 180 $\mu$ g/m <sup>3</sup>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인 때	

\* 미세먼지 : 석탄,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또는 제조업·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입자크기가 매우 작은 먼지이며, 지름이 10 $\mu$ m보다 작으면 PM<sub>10</sub>, 지름이 2.5 $\mu$ m보다 작으면 PM<sub>2.5</sub>로 분류

### □ 황사 및 미세먼지 관련 질환 및 증상

구분	종류	증상
호흡기 질환	기관지염, 천식, 폐기종 등	기침, 가래, 호흡 곤란 등
호흡기외 질환	알레르기성 결막염, 각막염	가려움증, 충혈, 통증
	아토피 피부염	가려움증, 피부건조증, 피부병변
	기타(뇌졸중,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)	-

### □ 황사 및 미세먼지 예방 기본수칙

#### ❖ 작업 및 장소관리

- 출입문, 창문 등을 닫아 **황사·미세먼지의 유입을 차단**하고, 현장에 쌓인 먼지 등이 다시 부유하지 않도록 물을 뿌려줄 것

#### ❖ 작업자 관리

- **옥외 작업시간을 최소화**하고, 평소보다 휴식시간을 더 자주, 더 길게 갖도록 조치할 것
- 손을 자주 씻고, 지저분한 손으로 얼굴(눈 등)을 만지지 않도록 할 것
- 작업종료 후 몸을 깨끗이 씻고, 황사·미세먼지에 노출된 작업복은 충분히 세척할 것
- **만성 폐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노동자, 고령자 등의 민감군의 경우** 가급적 옥외작업을 제한할 것

※ (응급상황 대비) 동료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상 시 신속히 119 구조대에 연락할 것

#### ❖ 의복 및 보호구

- 황사 및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**긴 작업복과 방진마스크\*** 등을 착용할 것  
(단, 민감군의 경우 방진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의사와 상담 후 착용할 것)

\* 안전보건공단 인증(2급 이상) 방진마스크 또는 식약처 인증(KF80 이상) 보건용 마스크